

울산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1597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1597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소2442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B

변론종결 2024. 4. 24.

판결 선고 2024. 6. 26.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0. 4. 선고 2022가소244204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4,060,797원 및 그 중 4,644,771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 D(이하 '선정자' 기재를 생략한다)는 각 16,040,531원 및 그 중 3,096,514원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신금융기관인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할부원금 10,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14.5%, 연체이자율 연 29%]를 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배우자 F(개명 전 성명 : G)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가 할부원금 및 이자 납입을 연체하자 원고는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채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6,544,334원과 그 중 10,837,800원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3. 8. 확정되었다(2011가소1637390호).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D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15. 망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청구금액 56,141,861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3.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2022차전1441호).

마. 원고는 2022. 3. 30. 망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보증채무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망 G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특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2022. 9. 19.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22. 10. 5.

확정되었다(2022가소211150호).

바. 한편 2021. 12. 15.을 기준으로 한 망인의 채무액은 원금 10,837,800원, 연체이자 45,304,061원 합계 56,141,8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3/7 비율로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24,060,797원(= 56,141,861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4,644,771원(= 원금 10,837,8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 약정이율 연 14.5% + 관련 법령1) 에서 정한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2/7 비율로 상속한 C, D는 원고에게 각 16,040,531원(= 56,141,861원 ×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3,096,514원(= 원금 10,837,800원 ×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5%(= 약정이율 연 14.5%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체가산이자율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637390호)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3.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2. 12.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한 2022. 2. 15.자 지급명령 신청(울산지방법원 2022차전1441호)과 2022. 3. 30.자 보증채무 이행의 소 제기(울산지방법원

2022가소211150호)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22. 2. 15.자 지급명령 신청과 2022. 3. 30.자 소 제기는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망인을 채무자 내지 피고로 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인 피고, C, D를 채무자 내지 피고로 정정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기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명령 신청과 소 제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및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연진

판사하대경

판사전정우

별지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